

패스트파이버 외부대관 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패스트파이버 주식회사(이하 “패스트파이버”)에서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지점의 세미나실, 스튜디오, 미팅룸 등 예약이 필요한 공용공간(이하 “미팅룸등”)의 이용, 결제 등과 관련하여, 패스트파이버와 신청자(본 약관에 따라 미팅룸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을 의미함. 이하 같음)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책임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미팅룸등의 이용계약의 성립)

1. 신청자는 미팅룸등을 예약하고자 하는 경우, 미팅룸등 예약 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이용시간 등을 선택하고, 행사내용, 예상 참석 인원 수 등 행사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신청자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미팅룸등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를 결제를 완료하여야 미팅룸등을 예약,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파이버는 신청자가 미팅룸등 이용정책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의 예약을 거절, 취소하거나,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예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i) 이미 다른 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미팅룸등을 예약한 경우
 - (ii) 특정 종교나 정치 홍보 목적 행사
 - (iii) 다단계 및 네트워크 마케팅 목적 행사
 - (iv)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강의, 홍보 등 영업활동의 목적 행사
 - (v) 참여예상 대상자 중 청소년이 있음에도 주류를 제공하는 행사
 - (vi) 기타 다른 고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패스트파이버가 판단하는 행사
 - (vii) 위 각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예약한 경우
3. 제 1 항에 따라, 이용계약이 성립한 경우, 패스트파이버는 신청자등의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이용시간 개시 전, 후 패스트파이버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미팅룸등이 위치한 공간에 출입할 수 권한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초대를 받은 방문객에게 부여합니다. 단, 이는 원활한 출입을 위하여 부여하는 권원일 뿐, 신청자 등에게 예약시간을 초과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3 조 (준수사항)

1. 신청자는 신청한 시간, 목적, 인원 수에 범위 내에서 미팅룸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 및 신청자의 초대를 받은 방문객은 패스트파이브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i) 승인조건의 변경행위

(ii) 미팅룸등의 시설 및 일정 변경행위

(iii) 패스트파이브에 사전 통지한 행사내용 임의변경 및 미팅룸등의 사용권 무단, 양도 행위

(iv) 예약인원 또는/및 미팅룸등의 사용가능 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v)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물 등의 섭취

(vi) 사전허가 없는 주류반입 행위

(vii) 제 2 조 제 2 항의 승인거절사유에 해당하는 행위

(viii) 고성방가 등 기타 다른 고객 등의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행위

2. 신청자는 행사내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패스트파이브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미팅룸등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뿐만 아니라, 패스트파이브가 요구하는 안전수칙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i) 미팅룸등의 사용에 있어 특정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팅룸등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한 후 패스트파이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i) 신청자는 신청자로부터 초대받은 제 3 자(신청자의 직접초대에 한하지 아니함) 또는 신청자의 행사에 참여한 인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미팅룸등 사용도중 발생한 모든 사고의 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제 3 자의 손해배상청구, 민형사상 이의제기 등으로부터 패스트파이브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면책하여야 합니다.

(iii) 신청자 등이 미팅룸등의 이용을 위하여 설치, 이동한 장비 및 기타 시설물은 사용 종료한 즉시 원상복구 및 외부로 반출 및 철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원상복구 또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패스트파이브 신청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임의로 반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으며, 관련 제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등의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iv) 신청자가 주최한 미팅, 행사 등과 관련하여 미팅룸등 및/또는 미팅룸등이 위치한 공간에 대한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전 서면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v) 신청자는 주류가 포함된 미팅, 행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상 주류소비가 금지된 자에게 주류가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신청자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준비, 시설준비 및 행사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은 신청자의 책임, 비용으로 하여야 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패스트파이브의 귀책없이 예약시작 시각보다 늦게 행사 등이 시작되거나, 행사 등이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5. 행사 등이 예약종료시보다 늦게 끝나는 경우, 신청자는 초과한 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이용료 정가의 2 배 및 제 3 자가 미팅룸등을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의 결제수단에서 추가 결제할 수 있습니다.
6. 신청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패스트파이브와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 및 공식 명칭과 BI 를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 홍보물을 부착/설치할 경우 패스트파이브가 지정하는 장소에 따라 게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미팅룸등 이용계약의 종료)

1. 신청자가 예약시간 이전에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가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설치한 설비등의 원상회복비용과 별도로 아래와 같이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며, 패스트파이브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가 있을 때에는 각 호의 취소수수료 및 원상회복비용 등과 정산하고,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i) 예약된 이용일로부터 3일 전: 이용료의 0%
 - (ii) 예약된 이용일로부터 2일 전부터 1일 전: 이용료의 50%
 - (iii) 예약된 이용일: 이용료의 100%
2.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신청자’의 행사내용 등이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패스트파이브는 언제든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청자는 본 약관에 따라 원상회복비용과 별도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합니다.
3. 신청자는 대관예약시간 종료시까지 신청자가 대관행사를 위하여, 설치, 이동한 설비등을 청소,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가 행사 후 청소 등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사, 미팅 등의 참석인원이 예상참석인원을 초과함으로써 청소 등의 공간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패스트파이브에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이를 패스트파이브에 배상하여야 하고, 패스트파이브는 제 3 조 제 5 항에 따라 이를 청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면책)

신청자는 미팅룸등 이용 중 대관행사 참석자 등의 귀책사유 또는 패스트파이브 또는 미팅룸등의 관리자가 정한 신청자의 관리의무, 미팅룸등 시설의 안전수칙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 손실(원상회복 지연에 따른 손해를 포함하고, 이에 한하지 아니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신청자는 패스트파이브 또는 참가자를 포함한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제 3자의 민원, 법적청구 등으로부터 신청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패스트파이브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 6 조 (양도금지)

본 약관에 따라 발생한 미팅룸등 사용권 등의 모든 권리는 패스트파이브의 사전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7 조 (별도 약관의 적용)

신청자가 패스트파이브와 멤버십 등록계약서 등 패스트파이브가 운영 또는 운영을 위탁 받은 지점의 특정 호실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 본 약관이 아닌 패스트파이브가 운영하는 웹(web)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서 정한 약관에 따릅니다.

제 8 조 (약관의 변경)

1. 패스트파이브가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 패스트파이브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 및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가 기재하신 E-mail 또는 APP의 공지를 통하여 변경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2. 공지된 약관 변경 내용에 대해 회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약관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약관 동의를 철회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2026. 10. 31 시행]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 10. 31 부터 적용됩니다.